##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33 발의연월일: 2020. 8. 18.

발 의 자:이종성·정운천·임이자

성일종 • 이명수 • 서정숙

박성중ㆍ이 영ㆍ강기윤

정동만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절차로 행정입원, 응급입원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비용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응급입원의 경우 정신질환 추정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정신의료기관이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가 어려워 응급입원의 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입원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제80조제1항).

법률 제 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 중 "제44조"를 "제44조 및 제50조"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0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	제80조(비용의 부담) ①
는 지방자치단체는 <u>제44조</u> 에	제44조 및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제50조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